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16.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사유

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조문을 정비하고,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상위법개정(폐기물관리법제16조)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조항 개정 (안 제5조)
- 나. 법률에 근거없이 규제한 “청소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수집·운반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”할 수 있는 조항 삭제(안 제8조제3항)
- 다. 상위법(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3항) 개정으로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(5톤 미만) 배출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처리 봉투 용도 지정(안 제9조)
- 라.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봉투공급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업무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하고,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6항)
- 마. 시지침에 의하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으로 「청결포상금」 지급기준 명시(안 제18조의3)
- 바. 상위법(폐기물관리법제6조제2항)개정에 따라, 토지·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명시(안 제18조의4)
- 사. 과태료부과 기준은 환경부 예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(안 제20조)

3. 관계법령

- 폐기물관리법, 같은법시행령, 같은법시행규칙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보관시설 등 설치관리) 제4조의 폐기물분리보관을 위해서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”를 “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,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”로 하고, 동조제2항 중 “음식물쓰레기만을”을 “음식물쓰레기만을, 소규모 건설폐기물용봉투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5톤미만(공사 착공시부터 완료때까지 발생하는 양)의 건설폐기물을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”을 “일반용봉투,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”로 하고, “동을”은 “동 등을”로 하며, 동조 제2항중 “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”를 “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”로 하며, 동조제4항중 “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”를 “일반용봉투,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”로 하며, 동조제6항중 “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”를 “구청장(동장)이 직접 판매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,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.”로 한다.

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8조의3(청결포상금) 구청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의4(청결 명령) ①구청장은 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·건물에 대하여는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”라 한다)는 대청소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소유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20조(과태료 부과기준) “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”를 “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(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규정)에 의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산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보관시설 등 설치관리) ①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등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, 도시미관,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.</p> <p>④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.</p> <p>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·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구청장은 법 제2조의2 제 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집 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였을 경우에는 법제28조, 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,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보관시설 등 설치관리) 제4조의 폐기물 분리보관을 위해서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쓰레기봉투의 용도 등)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와 <u>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</u>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</p> <p>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자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,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<u>음식물쓰레기만</u>,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.</p>	<p>제9조(쓰레기봉투의 용도 등) ①----- ----- <u>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,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</u> ----- ②----- -----음식물 <u>쓰레기만</u>,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5톤미만(공사 착공시부터 완료 때까지 발생하는 양)의 건설 <u>폐기물만</u>,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1조(쓰레기봉투공급 및 판매) ①일반용봉투 및 <u>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</u>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(이하“판매소”라 한다)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<u>등을</u> 통하여 공급한다.</p> <p>②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와 <u>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</u>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일반용봉투 및 <u>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</u>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.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 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쓰레기봉투공급 및 판매) ①일반용봉투, <u>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</u> 및 소규모건설폐기물 <u>전용봉투</u>는 ----- ----- ----- <u>등, 등을</u> ----- ②----- ----- <u>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</u> 및 <u>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</u> 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 ④일반용봉투, <u>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</u> 및 소규모 <u>건설폐기물전용봉투</u>의 ----- ----- ----- ⑤(현행과 같음)</p>

산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보관시설 등 설치관리) ①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등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어부, 도시미관,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.</p> <p>④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.</p> <p>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·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보관시설 등 설치관리) 제4조의 폐기물 분리보관을 위해서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
<p>제8조(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구청장은 법 제2조의2 제 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집 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였을 경우에는 법제28조, 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,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